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제64조 선도의 방법 3항의 5,	특별교육 이수는 ~ 무단결석 으로 처리한다.		
제64조 선도의 방법 4항의 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 의 출석정지 기간은 ~ '무단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결정 한다.	'무단결석'을 '미인정결석'으로 정정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에 따른 출결용어 정정
제65조 선도의 기준 11항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중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삭제	임신·출산·이성교제 등 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 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교규칙 개정 권고 (교육부, 2013)
별첨1 3단계의 4항	불건전한 이성교제, 씨클 을 만들어 ~ 침해한 경 우	'불건전한 이성교제' 삭제	
제65조 선도의 기준	신설	14항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지도(1, 2, 3, 4호)를 상습 적으로 받는 학생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내용 강 화
		15항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절 총칙 제104조 목적		본 규정은 신북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 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 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 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 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 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절 총칙 제105조 적용근거	신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 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 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한다.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절 총칙 제106조 정의</p>		<p>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절 총칙 제107조 교육 3주체의 책무</p>		<p>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08조 생활지도의 범위</p>		<p>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p>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p> <p>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09조 조언</p>		<p>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p> <p>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0조 상담</p>		<p>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p> <p>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p>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p>	

		<p>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p> <p>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1조 주의</p>		<p>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p> <p>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2조 훈육</p>		<p>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p> <p>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p>	

		<p>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 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p>※[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전문 참조</p> <p>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p> <p>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p> <p>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

		<p>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전문 참조</p> <p>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3조 훈계</p>		<p>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p> <p>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4조 보상</p>		<p>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p> <p>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5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p>	

		<p>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 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6조 이의제기</p>		<p>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8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 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7조 기타사항</p>		<p>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